

농림부 고시 제2000 - 81호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제3항, 제55조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5조에 의해 “수입생우 사후관리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0. 12. 23.

농림부장관

수입생우사후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내로 수입되는 생우를 사육·도축·가공 단계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입자 및 사육자 등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우(살아 있는 소)”라 함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 0102호에 해당되는 상품을 말한다.

2. “국내사육기간”이라 함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생우의 통관일로부터 제7조제1항의 “도축검사신청서” 또는 제7조2항의 “학술연구용등신고서”를 제출할날까지 계산한다.

3. “검사원”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3조에 의해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말한다.

제3조(원산지 표시 및 방법) 수입생우의 원산지표시는 생우 수출국의 수출업자가 소의 영당

이에 낙인을 표시하여야 하며, 낙인의 표시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낙인의 크기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최소직경 10cm이상)로 표시하여야 하며, 검역에서 도축·폐사시까지 소멸, 인멸, 훼손되지 않도록 각인되어야 한다

2. 표시 언어는 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에서 정한 국가별코드(예 : USA, AU, CAN, NZ 등)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검역관리 등) 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검역원장”이라 한다.)은 수입생우의 검역시 제3조에 정한 원산지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낙인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수입생우에 대하여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낙인표시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검역원장은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발급내역을 검역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입생우의 국내관리) ① 수입업자는 수입생우의 개체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수출국, 고유번호 및 통관일을 기재한 귀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검역원장은 제1항의 고유번호를 소속지원 및 출장소별로 부여하고 귀표의 크기와 재질, 기재사항의 기재방법 등을 정한다.

③ 수입생우를 취급하는 자는 제3조 및 제5조 제1항에 의한 낙인 및 귀표를 소멸·인멸·훼손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수입생우의 사육) ① 수입업자는 수입생우를 농가 등에 판매하거나, 또는 위탁사육하는 경우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사본을 수입생우를 사육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입생우를 수입한 자, 매매한 자, 사육하는 자는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을 통관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입생우를 사육하는 자는 수입생우가 폐사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검역원장 및 농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도축 등) ① 수입생우를 도축하고자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검사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의 비고란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 귀표번호 및 통관일자를 기재하고, 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사본을 받아서 첨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생우를 학술용으로 도축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학술

연구용등도살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에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 귀표번호 및 통관일자를 기재하고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원은 귀표번호와 통관일을 확인하여 도축검사증명서에 국내사육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는 국내산으로, 그 미만일 경우는 생우 수출국을 원산지로서 표시한다.

④ 검사원은 수입생우 도축검사시 제5조 제1항에 의한 귀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거나, 제4조 제2항의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사육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생우 수출국으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등) ① 시·도지사는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월별도축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검역원장 및 농관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농관원장은 제4조제2항의 검역증명서 발행실적과 제1항의 도축실적을 수입생우와 도축쇠고기의 원산지단속에 활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고시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유예기간) 제3조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3월 31일까지 수입된 생우는 대외 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할 수 있다.

수입생우사후관리요령 설명자료

1. 제정이유

- 2001년부터 쇠고기 수입이 자유화되고, 생우 수입도 가능하게 되었고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생우의 원산지표시를 국산(육우)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제6-3-1조)도 개정함에 따라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제공, 가축질병·위생 등 관리를 위해 수입생우에 대한 사육·도축에 따르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고시 법적근거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 제3항, 제55조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5조

3. 주요 내용

- 수입 생우의 원산지 표시(제3조)
 - 수입생우의 원산지표시는 생우 수출국의 수출업자가 소의 영덩이에 낙인을 표시
 - 낙인의 크기는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최소 직경 10cm이상)로 도축·폐사시까지 소멸, 인멸, 훼손되지 않도록 표시
 - 표시언어는 ISO에서 정한 국가별코드로 표시
- 수입생우의 검역과정상 관리(제4조, 제5조)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은 수입생우의 검역시 원산지 표시사항을 확인
 - 낙인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수입생우는 수

입업자가 표시

- 검역원장은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발급내역을 검역완료 10일 이내 관계기관(농관원, 시·도, 등급판정소)에 통보
- 수입업자는 수입생우의 개체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귀표를 부착
 - 귀표에는 수출국, 고유번호 및 통관일을 기재.
- 검역원장은 귀표의 고유번호를 소속지원 및 출장소별로 부여
- 수입생우를 취급하는 자는 낙인 및 귀표를 소멸·인멸·훼손·변경 금지.
- 수입생우의 국내거래 및 사육(제6조)
 - 수입생우의 수입·판매·사육시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사본첨부 및 보관(2년)
 - 수입생우 사육중 폐사하는 경우 시·도지사 신고(사육자)
- 수입생우의 도축시 국내사육기간 확인(제7조)
 - 도축업의 영업자는 "도축검사신청서등"의 비고란에 수출국, 귀표번호, 및 통관일자를 기재하고, 수입생우의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
 - 도축전에 검사원은 고유번호와 통관일을 확인하여 도축검사 증명서에 원산지를 표시
 - 6개월 이상 사육시는 국내산 육우고기로 표시(쇠고기종류별 등급별구분방법 개정하여 관보고시 의뢰중)

- 6개월 미만 사육시는 수입산 육우고기로서 수입국표시

□ 수입생우와 도축쇠고기의 원산지단속 강화 (제8조)

○ 시·도는 월별도축실적을 국립수의과학검역

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통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시·도는 검역발행 내용과 도축실적을 수입생우와 도축쇠고기의 원산지단속에 활용

□ 시행일은 2001년 1월 1일

수입생우 사후관리 절차도

